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호('24.2.7)로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자격요건에 오류가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무조정실장

1. 임용예정인원(1개 직위, 총 3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3명	채용일~ '25.12.31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	전문임기제 나급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세심판청구 사건 사실관계·법령 등 검토 및 사건조사서·결정서 작성조세심판관회의 참석 및 회의록 등 작성행정소송·국가소송·행정심판 등 쟁송 수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별지 1호) 참조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자격

①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②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요건(필수)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용어 정의 >

- 직무분야 경력 : 조세불복, 세무회계, 조세법령 등 조세 관련 업무
- 직무분야 학위 : 법학, 세무학, 경영학, 회계학, 기타 조세 관련 학과

③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하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응시요건에 필요한 경력 제외)
자격증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자격증 등급별, 개수별 차등 우대) ※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국내)

< 참 고 >

○ 기본사항

- '공통사항'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경력①/경력②/경력③, 학위①/학위②/학위③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권고사항)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민간단체·사업자등록업체에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상근여부(주당 근무시간)·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근무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필요(**미제출 또는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계산 기준

-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요건 지원 시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한 **관련경력 통산(공무원경력+민간경력)**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우대)

- 「변호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국내) 자격증에 한해 인정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② 2차시험 :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2.7.(수)~'24.2.19.(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원서접수	'24.2.7.(수)~'24.2.19.(월)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2.28.(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24.3.5.(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4.3.13.(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 2. 7.(수) ~ '24. 2. 19.(월), 09:00~18:00
 -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직급" 기재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비고
I.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6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II.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p>7.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8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p>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별지 9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p>9.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증빙 사본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공인회계사(국내) 자격증
<p>10. 주민등록초본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지원자만 제출(병역 확인용)

9.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4.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채용일 ~ '25.12.31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급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1,239천원	54,132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메일주소 : opminsa@korea.kr
 -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4.3.13(수)~'24.3.15.(금)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역량평가 관련 사항은 과장급 직위 채용 시에만 해당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044-200-2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